: : 2024.10.02.18:22 : : : 2025.05.15 11:46

[별지 제6호]

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

1. 가계수지표(2024년 8월분)(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기준)

	수입		지출			
	항 목	금 액	항 목	금 액		
급여 ^{또는} 자영	신청인	0원	주거비(임대료,관리비 등)	3,800,000원		
	배우자	2,000,000원	식비(외식비 포함)	300,000원		
	기타()	0원	교육비	0원		
	신청인	0원	전기 · 가스 · 수도료	100,000원		
연금	배우자	0원	교통비(차량유지비 포함)	200,000원		
	기타()	0원	통신료	200,000원		
	생활보호	0원	의료비	0원		
	-		보험료	100,000원		
	기타	0원	기타	0원		
수입합계 2,000,			지출합계 4,700,00			

2. 채무자의 가용소득(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경우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나머지 소득)

	구분	금액(단위 : 원)							
1	무자의 월 평균 소득1) 500,000원 (2023.10.부터 급여 수령 못 함)								
	생계비(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²⁾)	1인 가구	2인 가구	3인 가구	4인 가구	5인 가구	6인 가구		
	부양가족의 이름, 연령, 채 무자와의 관계	최원준, 15세, 자녀							
3	채무자의 가용소득 (1 - 2)	0원					-		

¹⁾ 최근 1년 동안의 모든 소득을 평균하여 기재하십시오

²⁾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(스스로 기준 중위소득의 40%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은 부양가족이 아닙니다)의 수에 해당하는 곳에 ○ 표 하십시오. 한편, 각 가구별 생계비로 기재될 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해당 연도의 기준 중위소득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서 매년 변경됩니다. 위 규정에 따라 올바르게 계산된 금액을 가구별 생계비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